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27(화) ~ 3. 2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만 접수 가능) <http://www.kipa.org>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2018년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운영 사업공고) 클릭→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동의→신청서 양식 작성→중소·중견기업확인서* 첨부 / (계속기업)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첨부 → 최종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및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첨부 바람. 그 외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는 최종 선정된 수혜기업에 한해 추후 받을 예정이오니, 신청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없도록 작성 요망

1. 기업 일반현황

- (1) 기업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 (2) 대표자명 : 대표자 전부를 기재
- (3) 설립일 : (작성예시) 2002년 1월 1일 경우, 20020101 입력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 (5) R&D과제수행 : '15년~현재 기준 건수
- (6) 산업분야 : 선택지가 없는 분야일 경우 기타 란에 표기바람
- (7) 매출액/수출액 : (매출액) 직전연도 3개년 평균, (수출액) 전년도 실적 기준

2. 지식재산 현황

- (1) 지식재산 등록/출원 현황 : 특허, 실용신안 등록, 출원 누계 건수 표기
- (2) 인증지정획득 : '이노비즈', '벤처', 'NET'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사항으로 기재하며, 향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3) 수상실적 : 기술·발명관련 실적의 누적건수 기재, 향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교육 신청 현황

- (1) 사업담당자 : 본 교육과정 신청 및 운영 전반 관련 담당자 정보 기입
*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입될 수 있도록 작성 시 주의바랍니다.

- (2) **교육신청** : 교육 장소, 교육 인원, 교육 시간 등은 참고용으로 수집하며, 향후 교육 설계에 따라 운영내용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 현황

- (1) **제품 판매방식** : 해당 기업 현황에 따라 대략적인 비율 표기 바람
- (2) **수출지역** : 해당 기업의 수출 현황에 맞게 지역 표기 바람
- (3) **특허관련-수혜사업** : 지식재산(특허 등) 관련 국가지원사업 참여실적을 간략히 작성 바람(예, 특허청 IP디딤돌 사업 수혜기업(2017년))
- (4) **기 참여 여부** : 본 사업 기 참여기업의 경우 필수 표기

5. 지식재산경영 현황 및 교육 추진계획

(1) **자사의 지식재산경영 현황**

- 해당 기업의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 관련 업무 프로세스, 임직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지 수준 등 현황 내용 작성

(2) **지식재산경영 관련 애로 및 현안사항**

- 기업 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데 있어 인력 운영, 사내 업무 프로세스 등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 작성

(3) **문제해결교육으로 희망하는 내용**

-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내용

(4)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

- 임직원의 실무역량 강화,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수출 증대 등 기대사항 작성

(5) **(기 참여기업만 필수 작성) 기 참여한 교육 내용 연계 심화과정 운영 계획**

- 이전 교육내용 바탕으로 계속기업으로 선정 시 심화교육과정 운영 계획 작성 바람

(6)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업로드)**

(7)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계속기업만 해당) : (양식 작성 후 업로드)**

- 기 참여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선정 시 현금분담금(75만원)을 교육수행비용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라 신청서 작성 시 동의서를 함께 제출 바람

Q. 지식재산 경영이란?

A1 : 지식재산(IP) 경영이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이외 노하우,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을 연구개발 부문 외에도 생산, 제품기획, 영업, 구매, 법무 등 기업경영 전반에 연계하여 기업경영 의사결정 시 IP를 핵심 지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정의가 가능)

A2 : 지식재산을 기업의 주요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지식재산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적 측면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